

개정 전	개정 후
<p>&lt;⑪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§33의3④⑤ 신설 : 개인 구입자&gt;</p>	<p>☞ 감면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면대상)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,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, 전용면적 85㎡·취득가액 6억원 이하,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(부담부증여 제외)로 취득(법인·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)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(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 제외)이 1년 미만인 아파트</li> </ul> </li> <li>○ (감면율) 취득세 최대 50% (법25%+조례25%)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6.12.31.</u></li> </ul>
<p>&lt;⑫ 주택도시보증공사 '미분양 안심환매 사업' §34⑧⑨ 신설&gt;</p>	<p>☞ 감면 신설(§34⑧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면대상자) 주택도시보증공사</li> <li>○ (감면대상) 2028.12.31.까지 매입하는 지방 준공 전 미분양 공동주택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,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</li> </ul> </li> <li>○ (감면율) 취득세 100%, 재산세 100%</li> <li>○ (일몰기한) 2030.12.31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최소납부세제 배제</li> </ul> </li> </ul> <p>☞ 감면 신설(§34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면대상자) 사업주체</li> <li>○ (감면대상) 환매기간(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년)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재매입하는 공동주택</li> <li>○ (감면율) 취득세 100%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최소납부세제 배제</li> </ul> </li> </ul>